

## 해외교류유학규정

1988. 06. 16 제정  
 1998. 09. 01 개정 2002. 03. 01 개정 2003. 10. 17 개정 2007. 10. 23 개정  
 2009. 02. 17 개정 2011. 05. 11 개정 2014. 7. 15 개정 2015. 10. 27 개정  
 2017. 1. 13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자매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교류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지원자격)** 자매대학에 교류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2학기부터 6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03.10.17., 2014.7.15)
2. 수료한 총 학기 평점이 3.0이상인 학생
3.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5. 외국어공인성적 취득 학생(별첨1) 개정(2011.5.11., 2015.10.27)

**제 3 조(등록)** 유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과 기타 납부금을 본교 경리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규학기 중 마지막 학기를 초과하여 유학하는 학생은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제적처리한다. 개정(2007.10.23., 2014.7.15)

**제 4 조(장학금)** 해외교류학생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성적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재학생 장학금’ 을 지급받는다. 신설(2014.7.15.)

**제 5 조(유학기간)** ①해외자매대학에서의 유학기간은 파견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위 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제적 처리한다.

②파견기간 중 중도에 유학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2015.10.27)

**제 6 조(선발 및 파견시기)** ①교류유학생 선발시험은 매년 2학기 초에 실시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2003.10.17., 2011.5.11,

2014.7.15)

②선발된 유학생은 해당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춰 과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2.3.1, 2011.5.11)

**제 7 조(교류유학시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유학생은 해외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최 저 9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공 및 부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 및 부전공이 아닌 과목은 본교 교과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유학생은 교류학생 과목이수계획서(별첨3)를 학과(부)장 및 대외협력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7.15., 2015.10.27)

**제 8 조(과목인정절차)** ①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과목인정은 자매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의거한다.

②교류유학 중에 취득한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귀국 즉시 국제교류팀에 귀국 사실을 알리고 성적표를 받아 교류학생 대체과목인정 신청서(별첨2)를 소속학부(과)에 제출한다. 대체과목인정 신청서(별첨3)는 자매대학 학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2002.3.1., 2011.5.11., 2015.10.27)

③소속학과(부)에서는 학과(전공)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과목을 선정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에게 대체과목인정서(별첨4)를 제출한다. 개정(2015.10.27)

④교무연구처는 결과를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에 통보한다.

**제 9 조(과목인정원칙)** ①교과목 명칭과 동일한 것을 우선으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과목 대체는 전필, 전선, 교필, 교선순으로 대체한다.

③동일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과목순으로 대체한다.

④유사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교양선택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대체한다.

⑤대체후 인정받지 못한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교의 대체과목 학점에 맞게 조정하여 인정하되, 성적이 상이한 경우 낮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⑥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언어연수과목 은 전필, 전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 신설(2011.5.11)

**제 10 조(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①학점인정은 연간 35학점의 범위내에서 한남대학교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단,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학점체계를 사용하는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 ECTS당 0.67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소수점 이하 버림) 개정(2014.7.15., 2017.1.13.)

②교류학생의 성적평가는 과견국가에 관계없이 Pass / Fail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9.2.17, 2014.7.15)

③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대체과목인정서 접수 후 교무연구처에서 교류학생 성적 인정기준(내규)에 의해 산정한다. 개정(2011.5.11., 2014.7.15)

④'교류학생 학점인정에 대한 성적취득기준' (별첨5)에 해당하는 대학이 없는 경우는 본교 성적인정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신설(2009.2.17.), 개정(2014.7.15., 2015.10.27)

1. 기준 실점이 70점 이상은 Pass
2. 기준 실점이 70점 미만은 Fail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외국어공인성적 취득 기준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 유효

| 언어권               | 자격요건   |
|-------------------|--|
| <p><b>영어권</b></p> | <p>-미국: TOEFL IBT 78 이상<br/>                     -유럽: TOEFL IBT 70 이상<br/>                     ※TOEIC 및 기타 증명서 접수불가; TOEFL만 가능<br/>                     -기타 영어권 국가: 외국어공인능력시험 인증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 심사 후 기관토플 응시</p> |
| <p><b>일본</b></p>  | <p>외국어능력시험 인증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지만, JPT 660, NJLPT 2급 이상 소지자 우선 선발</p>   |
| <p><b>중화권</b></p> | <p>외국어능력시험 인증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지만, 新 HSK 4급 이상 소지자 우선 선발</p>  |



(별첨3) 파견교류학생 대체과목 신청서

|                 |     |    |                 |         |    |    |
|-----------------|-----|----|-----------------|---------|----|----|
| 소속 대학 및 학부(과)   | 대 학 |    | 전공(학과)          |         | 학년 |    |
| 학 번             | 성 명 |    |                 |         |    |    |
| 자 매 대 학 명       |     |    |                 |         |    |    |
| 해 외 유 학 기 간     |     |    |                 |         |    |    |
| 대 체 과 목 신 청 내 용 |     |    |                 |         |    |    |
| 자 매 대 학 이 수 과 목 |     |    | 본 교 대 체 인 정 과 목 |         |    |    |
| 교 과 목 명         | 학점  | 성적 | 이수구분            | 교 과 목 명 | 학점 | 성적 |
|                 |     |    | 학년도 제 학기        |         |    |    |
|                 |     |    |                 |         |    |    |
|                 |     |    | 학년도 제 학기        |         |    |    |
|                 |     |    |                 |         |    |    |
| 학 점 계           |     |    | 학 점 계           |         |    |    |
| 기 타:            |     |    |                 |         |    |    |

\* 본교 대체인정과목란의 성적은 학사관리팀에서 기입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첨5) 교류학생 학점인정에 대한 성적취득기준

|     | 본교 학점인정 관련 자매대학 성적표기 |                   | 비고  |
|-----|----------------------|-------------------|---|
|     | 실점/만점                | 등급/만점             |   |
| 영조권 | 70점 이상 / 100점        | C-이상<br>/ A 또는 A+ | 필리핀 De La Salle University<br>: 2.0 이상/4.0 만점 |
| 키야권 | 70점 이상 / 100점        |                   |   |
| 일본권 | 70점 이상 / 100점        | B 이상<br>/ S 또는 AA | Nanzan University<br>: B- 이상/A+ 만점            |
|     |                      | 良 이상/優            |   |

\*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해진 실점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Pass로 인정됨.